

2022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시보기

두번째 이야기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두번째 이야기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고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무죄?

피고인(20대 남성), 피해자(10대 여성)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부인!!

재판부 **무죄** 선고!





무죄 판결 이유1

1. 피해자다움의 결여

이유 :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행동이 아니었다.

① 피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오며 화장을 고쳤다?

②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자 따라갔다?

재판부曰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다움이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의 행동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



무죄 판결 이유 2

이유 : 법정에서의 진술 반복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말이
다르잖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한 '강제력을 행사한 방법',
'피임기구를 사용한 부위' 등을 경찰 조사에서 다르게 진술,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았다.



재판부 曰 피해자의 진술 반복을 지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도대체 '피해자다움'이 뭔데요?

대법원 판결(2020. 9. 7 선고 2020도 801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 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무서워 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 다움에 대해 배척하면 안된다고 지적

출처: 서울대공익법률센터 통계법무실습 판례분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형화 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입니다.

시선바꾸기 1

만약 피해자가 이랬다면요?

만약! 너무 당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한 것이라면?

만약! 지금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게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라면?

만약! 성폭력 피해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

만약!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았다면?

만약! 나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인지 몰랐다면?

만약! 너무 놀라서 그대로 몸도 뇌도 정지(Freeze) 상태였다면?



유독 성.폭.력에서만 강조되는 피해자다움 통념

납치되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상해 보이나요?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폭행을 당한 이후, 가족들이 걱정할까
염려되어 인근 공원 화장실에 가서 흐트러진 옷과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
이 모습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진술의 신빙성'이 뭔데요?

대법원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서울대공익법률센터 통계법무실습 판례분석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범죄를 판단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다움 ≠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다움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데 힘들어 하거나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 맞는 주장인가요?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유형 중
논리적 사고의 불가능과
집중력 저하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매릴랜드주립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는 어떨 때는 신경질이 계속 생각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뇌가 왔다 갔다 해요.
백지상태가 돼요.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꼬일 때도 많아요.”

(출처: 인스파이어 영상, 신의진,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피해자다움에 따르면 피해자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 있을텐데요.

그럼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선바꾸기 3

해외는 어떻게 볼까요?

ECPAT Indonesia

***아동심리전문가꼭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착취의 경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CPAT Philippines

***성인과 아동의 합의 성관계란 없습니다! 아동의 증언이 먼저!**
성인이 아동을 성착취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후 아동의 행동은 범죄사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피해자다움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집중해주세요.
2.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태도는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진술의 신빙성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영상 녹화,
진술전문가 동행 등 사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시선**을 바꾸어서 사건에 집중해보세요.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